

의안번호	2203357
의 퇴 인	이수진 의원
회 답 일	2024.9.4.
추 계 번호	24B333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여야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제1항)	의무규정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두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근로시간의 면제 또는 수당 등의 지급을 통해 그 활동을 보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과 활동보장에 드는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사업장에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의 근로시간의 면제 또는 수당 등의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임

- (안 제23조제1항) 개정조항이 시행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여야 함
- (안 제23조제2항) 개정조항이 시행될 경우 사용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두는 경우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근로시간의 면제 또는 수당 등의 지급을 통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보장하여야 함
 - 개정조항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근로시간의 면제 또는 수당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없으나, 이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이므로 개정조항의 시행으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안 제23조제4항) 개정조항은 정부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과 활동보장에 드는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규모 확대에 따라 장래에 발생할 신규 사업의 추진 규모와 기존 사업의 확대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 개정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추계에 필요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증가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
 - 참고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제4항¹⁾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2023년 기준 2,827명으로 2025년 고용노동부는 ‘산재예방운영 기타경비’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한 위촉장 지급, 자료 제작, 간담회 개최 등을 목적으로 약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음

Ⅲ. 부대의견

□ 없음

1)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개요 및 현황

자료: 고용노동부

□ 제도 목적

- 근로자 등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사업장 자체점검 참여 업무 등을 부여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

□ 업무 범위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감)은 사내·사외 명감으로 구분
 - 사내 명감은 자체점검 및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참여, 산재 예방 계획 수립 참여, 법령 위반 개선 요청, 작업중지 요청,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지도 등 업무 수행
 - 사외 명감은 법령 및 산재 예방정책 개선 건의, 안전·보건 의식 제고 활동에 대한 참여 및 지원 등의 업무 수행

□ 위촉 절차

- 근로자대표 등이 고용부에 사내·사외 명감을 자율적으로 추천 → 고용부 위촉(법령에서 정한 추천 절차 준수 여부 등 확인)
 - (사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장 근로자 중에서 해당 사업장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제조업 등 100명 이상(유해·위험업종 50명 이상, 농업 등 300명 이상), 건설업 120억원 이상 사업장 등
 - (사외) 연합단체 노조 또는 지역 대표기구, 전국 규모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 산재예방 전문기관 또는 그 산하조직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

□ 해촉 사유

- 고용부장관은 해촉 사유가 있는 경우, 명감을 해촉할 수 있음
 - (해촉사유) 근로자대표가 요청하는 경우(사내 명감), 해당단체 등에서 퇴직·해임된 경우(사외 명감), 명감이 업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명감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위축 현황

(단위: 명)

구분	총계	사내 명감	사외 명감			
			계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산재예방단체
2023년	2,827	2,405	422	383	7	32
2022년	2,833	2,425	408	364	13	31
2021년	2,715	2,362	353	306	14	33
2020년	2,612	2,286	326	279	14	33